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장상윤 (교육부장관 직무대행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일부 개정 및 교육부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, 교육과정 연수,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 등 후속지원 관련 사항 일체(안 제43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예정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)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추진방향, 추진범위, 내용, 예산지원
2.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, 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성취수준, 평가기준 개발·보급 방안
3. 다양한 연수 및 홍보를 통한 교육과정 이해 제고 방안
4. 교육과정 관련 시·도교육청 컨설팅 및 학교 연구활동 지원 방안
5. 지역,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, 의견 수렴, 사례 공유 지원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방안
6. 교육과정 관련 정보서비스 운영 방안
7. 그 밖에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3조의2(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)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1.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추진방향, 추진범위, 내용, 예산지원</u> <u>2.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, 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성취수준, 평가기준 개발·보급 방안</u> <u>3. 다양한 연수 및 홍보를 통한 교육과정 이해 제고 방안</u> <u>4. 교육과정 관련 시·도교육청 컨설팅 및 학교 연구활동 지원 방안</u> <u>5. 지역,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, 의견 수렴, 사례 공유 지원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방안</u> <u>6. 교육과정 관련 정보서비스</u>

	<u>운영 방안</u> <u>7. 그 밖에 교육과정 후속지원</u> <u>계획 수립 · 시행과 관련한 사</u> <u>항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7033